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심 사 보 고

1999. 9. 9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9년 9월 1일

○ 회부일자 : 1999년 9월 1일

다. 상정일자 : 제1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1999. 9. 9)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차 주 영)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안 제7조)
- 행정재산 사용허가조건 일부 완화
 -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손해보험증서 제출 및 사용허가 표지 부착조항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안 제14조)
-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대상조정
 - 영세민 철거 주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납부 이자율 8%에서 5%로 조정
 -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에 한하여 매각 대금을 분납토록 하였으나, 이를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확대
 - 중소기업의 공장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 신설(안 제22조)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조정
 - 농경지 대부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이나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산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 주거용 건물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하였으나, 생활보호대상자일 경우 10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

-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만 대부료 1000분의 10을 적용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여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를 10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함.(안 제23조)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사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미대부 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을 경우 대부료를 20%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요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특례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산 대부의 탄력성을 높임.(안 제23조의 2)
-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
 - 외국인투자기업중 제조업인 사업에만 적용하던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확대(안 제23조의 3)
-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른 신탁의 종류를 정함.
 - 잡종재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정함.(안 제31조의 2)
-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범위 확대
 - 외국인 투자 기업에 지금까지는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에 한하여 조성원가로 매각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모든 공장용지로 확대(안 제39조의 4)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 김 종 만)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안 제8조, 제14조 5호 및 6호, 제17조, 제19조의 2, 제23조 3항 및 4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삭제 및 정비사항이며
- 안 제23조 제9항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을 적용하도록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22조 제2항 제5호, 제23조 제8항, 제23조의 3, 제39조의 4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조치로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사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며
- 안 제31조의 2는 잡종재산 신탁제도 도입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의 개선·보완과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용어의 정비,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개정조례안 일부조문의 근거규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5829호, '99. 2. 8)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 폐지('99. 8. 6)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안 제22조제3항제5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수정
-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안 제31조의2) 문구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 조문대비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제14조중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 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 3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중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중 “제1호”를 “제5항제1호”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중 “제6호”를 “제2호, 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및 제16호”로 하며, 동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분은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를 “광업채석의”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동조 제6항중 “1000분의 25로 한다”를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로 하고, 동조 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의”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로 하며, “기술연구집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를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하되, 월할로 계산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증 가 율		대 부 료 인 상 율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없다.

제23조의 3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자들이 전용 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	---	--------------------------	---	--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로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 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동조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 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동조 제4항제1호중 “외·투법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동항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동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도, 시·군·구, 읍·면·동의”를 “당해 도의”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을 “유관 행정 관서를”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0조의 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5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①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지방제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6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 ----- ----- -----</p> <p>1. ----- ----- ----- -----지급-----</p>

현행	개정안
<p>2. (생략)</p> <p>② (생략)</p> <p>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후에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④~⑤ (생략)</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내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사항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p><신 설></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도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삭 제>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8조(처분제한 비도) 공유재산의 처분제한은 반드시 처분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그 비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1.~2. (생략)</p> <p>3. <u>군지역 : 900제곱미터이하 토지</u></p> <p>4. (생략)</p> <p>④ (생략)</p> <p>제14조(사용허가조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p> <p>1.~4. (생략)</p>	<p>제8조 <삭 제></p> <p>제11조(관리 및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 : 9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u></p> <p>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사용허가조건) ----- -----</p> <p>1.~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손해보험증서 제출</p> <p>6. 사용허가표지 부착</p> <p>7.~8. (생략)</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p> <p>제17조(불용재산의 처분) 공유재산중 재산가치의 중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타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의 설치예정지구 기타 사유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8조(잠종재산의 현황 파악) ①잠종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p> <p>1. 장래에 공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p> <p>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p> <p>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p>	<p>5. <삭 제></p> <p>6. <삭 제></p> <p>7.~8.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용허가부의 비치) <u>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u> -----</p> <p>제17조 <삭 제></p> <p>제18조(잠종재산의 현황 파악) <u>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 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u></p> <p>1. -----행정재산으로-----</p> <p>2. -----</p> <p>3. -----</p>

현행	개정안
<p>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p> <p>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p> <p><u>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별도 재산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 취득처분과 대부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여 재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u></p> <p>제19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 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u>제100조제2항제5호</u>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p> <p>제19조의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p>	<p>4. -----</p> <p>5. -----</p> <p>제19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 ----- -----<u>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u>----- -----</p> <p>제19조의 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인정하는</u>-----</p>

현행	개정안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제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제산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 제39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②-----</p> <p>-----</p> <p>-----</p> <p>1. <삭 제></p> <p>2. -----제5항제1호-----</p> <p>3. <삭 제></p>

현행	개정안
<p>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2.~4. (생략)</p> <p><신설></p>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③----- ----- ----- -----</p> <p>1. -----제2호, 제6호----- 및 제16호----- -----</p> <p>2.~4. (현행과 같음)</p> <p>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u></p> <p>④----- ----- ----- -----</p>

현행	개정안
<p>1.~4. (생략)</p> <p>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p> <p>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분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p> <p>③영 제9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허가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p> <p>1.~3. (생략)</p>	<p>1.~4. (현행과 같음)</p> <p>5.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p> <p>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 사용료의 요율-----</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광업채석의 -----</p> <p>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제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p> <p>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제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⑨----- -----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 -----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제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할 수 있다.</p> <p>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제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증가율		대부료 인상율		-----		-----			
10%이상	20%미만	$10\% + (\text{증가율} - 10\%) \times 0.3$		-----		-----			
20%이상	50%미만	$13\% + (\text{증가율} - 20\%) \times 0.1$		-----		-----			
50%이상	100%미만	$16\% + (\text{증가율} - 50\%) \times 0.06$		-----		-----			
100%이상	200%미만	$19\% + (\text{증가율} - 100\%) \times 0.03$		-----		-----			
200%이상	500%미만	$22\% + (\text{증가율} - 200\%) \times 0.01$		-----		-----			
500%이상		$25\% + (\text{증가율} - 500\%) \times 0.005$		-----		-----			
<p><신 설></p>				<p>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인 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대부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제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u></p> <p>나.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다. <u>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p> <p>라. (생략)</p> <p>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p> <p>바. ~ 사 (생략)</p>	<p>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 ----- ----- -----</p> <p>1. -----</p> <p>가. <u>외국인투자촉진법</u>----- ----- -----</p> <p>나. -----이상 인 사업</p> <p>다. <u>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u></p> <p>라. (현행과 같음)</p> <p>마. <u>외국인</u> ----- -----</p> <p>바. ~ 사.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2. 75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 바. (생략)</p>	<p>2. -----</p> <p>가. -----</p> <p>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미만인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 -----</p> <p>-----</p> <p>마. ~ 바. (현행과 같음)</p>
<p>3. 50퍼센트를 감면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이상 2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p> <p>다. (생략)</p> <p>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p> <p>마. ~ 사. (생략)</p>	<p>3. -----</p> <p>가. -----</p> <p>미만인 사업</p> <p>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외국인 -----</p> <p>-----</p> <p>마. ~ 사.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p> <p>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 <p>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p> </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width: 40%;"> <p>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해당층의 총면적)</p> </div> </div>

현행	개정안
<p>2. 2층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p>	<p>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p>
<p>3.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4.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p>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p>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p>

현행	개정안
<p>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p> $\text{대부를 받은자가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times \frac{\text{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p><신 설></p>	<p>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p> <p>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p> <p>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p> <p>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 (생략)</p> <p>③ <u>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u></p> <p>④ <u>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u></p> <p>제27조(대부료 사용제한) <u>대부료 수입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제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6. <u>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u></p> <p>제2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삭제></u></p> <p>④ <u>제1항 및 제2항의 ----- ----- -----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u></p> <p>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u>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공유재산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대부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29조(대부정리부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 ----- 대부정리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 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9의 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정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p> <p>② (생략)</p>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유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p>	<p>제39의 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 ----- -----농업진흥지역안의-----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현행	개정안
<p>2.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생개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p>	<p>2. ----- -----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 ----- ----- -----</p>
<p>3.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4.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p>	<p>3. ----- ----- ----- ----- -----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 ----- -----</p>

현행	개정안
<p>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 ----- ----- -----</p>
<p>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3. (생략)</p> <p>4.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② (생략)</p> <p>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제39조의 4(매각대금의 감면) ①-----</p> <p>----- ----- ----- -----</p> <p>1.~3. (현행과 같음)</p> <p>4. ----- 조성한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이상인 대형 공장 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의·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분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p> <p>2. (생략)</p> <p>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p> <p>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p>	<p>1. (현행과 같음)</p> <p>2. ----- 사업 -----</p> <p>3. ----- 사업장내-----</p> <p>④----- -----</p> <p>1. <u>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사업장내의 재산</p> <p>4. <u>외국인</u>----- -----</p>

현행	개정안
<p>5. (생략)</p> <p>⑤ (생략)</p> <p><신설></p> <p>제45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도지사는 <u>도·시·군·구, 읍·면·동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사신축계획서에 의거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청사신축시행계획은 신축년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45조(청사정비계획 수립등) ①-----<u>당해 도의</u> ----- <u>고려하여</u>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9조(종합청사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u>경찰관서, 농촌지 도소 및 보건소등의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 모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 하는 <u>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 는 공용전세주택을 말한다.</u></p> <p><신 설></p> <p>제62조(준용) 도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 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u>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u></p>	<p>제49조(종합청사의 도모) ①----- ----- <u>유관 행정관서를</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도지사, 부지사, 시설관리사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 하는 <u>공용주택을 말한다.</u></p> <p>제60조의 2(준용) <u>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 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62조(준용) ----- ----- <u>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u>-----</p>

현행	개정안
<p><부칙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안)

제안년월일 : 1999. 9. 9

제안자 : 유 주 열 의원

1. 수정이유

개정조례안 일부조문의 근거규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829호, '99. 2. 8)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폐지('99. 8. 6)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2. 수정 주요골자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 삭제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안 제22조 제3항 제5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함.
-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
· “금융감독위원회 신탁업 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안 제31조의2) 문구 삭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 (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3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고,

안 제31조의2(신탁의 종류)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을 삭제한다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 ② (생략)</p> <p>③ -----</p> <p>1. ~ 4. (생략)</p> <p>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u>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용지,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u>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u>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u>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p> <p>① ~ ② (생략)</p> <p>③ -----</p> <p>1. ~ 4. (생략)</p> <p>5.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u>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용지, <u>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u>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u>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u>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u>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u> 의한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